

2006. 1. 27.(금)

제1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사보고서

-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위원회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 17.

제천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 1. 19.

다. 상 정 일 자 : 2006. 1. 24.(제120회 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가. 제안사유

-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반의 재 조정과 아파트 신축지역과 충주댐 수몰지역 마을중 일부 지역에 대한 반 획정 기준을 완화하여 3개반을 신설코자 함.

나. 주요내용

- 템 검설로 인한 수몰마을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0호 미만인 경우에도 반을 구성(제3조)
 - 제천시 통·반 조정내역

현 행		증 감		변 경		비 고
리.통	반	리.통	반	리.통	반	
443	1,976	증2	감36	445	1,940	-반시설 : 20개반 -반폐지 : 56개반 -반 구역조정 : 430개반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후준)

- 택지개발, APT신축, 도로개설등 주거환경의 변화에 따른 주민의 주거이동으로 인하여 일부 불합리한 이·통·반을 조정코자 천남

동 코아루 APT 단지내 2개통 11개반을 신설하고 한수면 수몰마을에 대하여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20호 미만에 대한 반을 증설 코자 하는 것으로 반수 조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충청북도 예규 충청북도행정리통반 조정지침에 반 조정 기준은 농촌 20호로 되어 있고 리통 조정에 따라 병행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리동 조정기준에 지형, 도로, 하천, 자연부락, 거리 등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천시 통반설치조례 제3조(획정기준) 반을 20호 내지 30호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역부락 취락형태 등을 감안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현행 조례의 해석에도 20호 미만의 경우에도 반을 구성할 수 있으나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20호 미만인 경우에도 반을 구성할 수 있는 규정으로 산촌부락이나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반조정을 현실에 맞도록하여 주민편의에 대비한 점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가. 질의요지

- 제3조로 인해 몇개반이 더 신설되는가? (윤성열 위원)
- 아파트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데도 건축허가대로 통반을 신설할건가? 실질적인 입주자에 따라 통반을 설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성열 위원)

나. 답변요지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 3개반

○ 저희들도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 다만 몇세대가 아파트에 입주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한 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설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 소수의견

“없 음”

6. 토론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심사보고 불임서류

○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